

## 의료비 저축 계좌 (Health Savings Account, HSA) – 2019

연금국은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에게 은퇴, 의료, 사망, 그리고 장애 혜택을 제공하며,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관장합니다. 또, 연금국은 보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, 그리고 직업상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.

### 혜택 요약 (Summary)

의료비 저축 계좌(HSA)는 절세 혜택이 있는 개인 계좌로써 자격이 되는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Menu options 의료 플랜 중 공제액이 높은 의료 플랜(high deductible health plan, HDHP)에 가입된 고용인은 HSA 를 만들고 적립할 수 있습니다. 고용기관도 자격이 되는 고용인을 위하여 HSA 에 적립해 줄 수 있습니다. 고용기관이 적립하는 액수와 고용인이 적립하는 액수 모두 자격이 되는 의료비로 이 기금이 사용되는 한 연방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HSA 적립금은 HDHP 공제액과 가입자 분담금을 지불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, 장래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저축될 수 있습니다.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며, 직장을 옮기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나 은퇴 후에도 자격이 되는 의료비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자격 (Eligibility)

HSA 를 만들고 적립하려면, 고용인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:

- 연금국을 통하여 제공되는 HDHP 같은 HSA 가 가능한 의료 플랜에 들고 있어야 하며;
- 배우자의 의료 플랜을 포함하여 HSA 가 가능하지 않은 의료 플랜에 들고 있지 않아야 하고;
- Medicare 나 Tricare 에 들고 있지 않아야 하며;
-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올라있지 않아야 하고;
- 미국 영주권자여야 합니다.

### 적립 (Contributions)

자격이 되는 고용인은 일반적으로 IRS 가 정해 놓은 그 해 최대 한도액까지 세전 급여에서 공제하여 HSA 계좌에 적립합니다. 2019 년 적립 한도액은 가입자 혼자 들고 있을 경우 \$3,500 이며, 가족이 포함된 경우 \$7,000 입니다. 2019 년에 55 세 혹은 그 이상 되는 가입자는 \$1,000 까지 추가 적립(catch-up contributions)을 할 수 있습니다.

이 적립액은 연방 소득세와 FICA (Social Security 와 Medicare) 세 과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. 또, 안수받은 목회자일 경우 HSA 적립액은 SECA 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고용 기관은 고용인을 위하여 HSA 적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적립액은 고용인에게 과세 대상이 아니며, 고용기관과 고용인이 함께 적립할 경우에 합한 적립액이 IRS 가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HSA 적립액은 고용인의 구좌에 적립되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### **절세 혜택 (Tax Advantages)**

HSA 적립액은 세전 급여에서 공제됩니다. 투자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(혹은 세금 연기 대상), 자격이 되는 의료비로 사용되는 적립액도 비과세 대상입니다

### **지금과 미래를 위한 저축 (Savings now and for the future)**

고용인은 HSA 잔고에 대한 이자는 세금이 없으며, 구좌 잔액이 \$1,000 이 되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. Flexible spending accounts 와는 달리 HSA 잔고 전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.

고용인은 자격이 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, HSA 기금을 사용하여 지불할 수도 있고,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지불하여 HSA 기금이 더 불어나서 장래에 자격이 되는 의료비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

### **자격이 되는 의료비 (Eligible Expenses)**

고용인은 자격이 되는 자기 자신의 의료비나 가족의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HSA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때, 가족은 고용인 세금 보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올라 있어야 하지만, 연금국 의료 플랜에 등록하고 있지는 않아도 됩니다.

자격이 되는 의료비는 세금 공제로 포함할 수 있는 의료, 치과, 안과 관련 의료 비용입니다. 예를 들면, 공제액, 가입자 분담금, 치과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치과 비용이나 교정 치료비, 그리고 처방약 등이 포함됩니다. 자격이 되는 의료비는 IRS Publication 502 (Medical and Dental Expenses) 에 열거되어 있습니다.

**주의!** 고용인은 자신의 HSA 기금이 자격이 되는 의료비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 만약, 자격이 되지 않는 의료비에 이 기금을 사용했으면, 그 액수는 연방세를 지불해야 합니다. 65 세 이하인 가입자는 추가로 20 %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 IRS 감사를 대비하여 자격이 되는 의료비에 사용한 것을 증명하는 모든 청구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.

## 절차 (How it works)

HSA 에 관하여 아래 절차를 참고하십시오:

- 고용인은 다음 해의 자격이 되는 의료비가 얼마나 될 지를 예상합니다.
- 급여에서 일 년동안 떼어 놓을 액수를 정합니다. 다음 해의 자격이 되는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HSA 로 들어가게 합니다. (이 액수를 *election* 으로 부릅니다)
- HSA 로 정한 액수는 가입자의 세전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어 다음 한 해동안 HSA 로 들어갑니다.
- 고용인이 자격이 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, 의료비 Visa debit 카드로 지불하거나 Further 의 안전한 가입자 구좌를 통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환불을 요청하거나 비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고용인은 현재 HSA 에 적립된 액수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
## 등록 (Enrollment)

고용인은 HSA 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. HDHP 옵션을 선택하고 HSA 를 개설할 자격이 되는 가입자는 선두적인 HSA 행정기관인 Further 를 통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다른 행정기관을 통하여 HSA 를 이미 가지고 있는 고용인은 잔액을 Further 로 옮겨 합칠 수 있습니다.

## HSA 비용 (HSA fees)

HSA 를 개설하는 각 고용인에 대하여 고용기관은 각 고용인당 한 달에 \$0.75 씩 비용을 부과합니다. Further 는 각 고용기관으로 매월 청구서를 직접 보냅니다. 처음 개설할 때 비용은 없습니다.

## 상세한 내용 (For more information)

HSA 관련 문의가 있는 고용기관은 Further Employer Support, 855-363-2583 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부 시간으로 8 am 부터 5 pm 까지 전화하거나, [sales.support@hellofurther.com](mailto:sales.support@hellofurther.com) 으로 문의하십시오. 기타 질문은 연금국, 800-773-7752 (800-PRESPLAN)으로 전화하십시오.

*이 설명서에는 플랜의 혜택과 제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이 설명서와 공식적인 은퇴 저축 플랜 문서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식적인 플랜 문서가 우선합니다. 공식적인 문서를 원하면 [pensions.org](http://pensions.org) 를 이용하거나, 800-773-7752 (800-PRESPLAN) 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십시오.*